

시설급여비용 변경 안내문

안녕하세요 감사랑너싱홈입니다.
[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-219호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3조제3항, 제23조제1항 및 제3항, 제24조제2항, 제28조제2항, 제35조의5제3항, 제38조제6항 및 제7항, 제39조제1항 및 제3항,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, 제11조, 제12조, 제18조, 제22조,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324호, 2021.12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] 의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에 따른 직원의 배치 기준 변경(개정 전 입소자 2.5명당 요양보호사 1명 / 개정 후 2.3명당 요양보호사 1명) 으로 장기요양보험 1일당 급여비용이 10월 01일자로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1.수가산정

등급	1일 급여비용(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)	
	변경 전	변경 후
1등급	74,850원	78,200원
2등급	69,450원	72,550원
3,4,5등급	64,040원	68,510원

2.급여

일반					40%감경					60%감경				
31 일	등급	본인 부담금	식대 간식대	합계	31	등급	본인 부담금	식대 간식대	합계	31	등급	본인 부담금	식대 간식대	합계
	1	484,840	387,500	872,340		1	290,900	387,500	678,400		1	193,930	387,500	581,430
	2	449,810	387,500	837,310		2	269,880	387,500	657,380		2	179,920	387,500	567,420
	3~5	424,760	387,500	812,260		3~5	254,850	387,500	642,350		3~5	169,900	387,500	557,400
30 일	1	469,200	375,000	844,200	30	1	281,520	375,000	656,520	30	1	187,680	375,000	562,680
	2	435,300	375,000	810,300		2	261,180	375,000	636,180		2	174,120	375,000	549,120
	3~5	411,060	375,000	786,060		3~5	246,630	375,000	621,630		3~5	164,420	375,000	539,420
28 일	1	437,920	350,000	787,920	28	1	262,750	350,000	612,750	28	1	175,160	350,000	525,160
	2	406,280	350,000	756,280		2	243,760	350,000	593,760		2	162,510	350,000	512,510
	3~5	383,650	350,000	733,650		3~5	230,190	350,000	580,190		3~5	153,460	350,000	503,460